



진안군

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군	수
람		

조례

군 보

제568호 2021.9.2.(목)호외

- 진안군 조례 제2567호 (진안군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)1

발행 진 안 군 (편집 기획홍보실(063)430-2822)

진안군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
이에 공포한다.

진안군수 전 준



2021년 9월 2일

진안군 조례 제2567호

진안군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진안군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웰다잉(Well-Dying)문화조성”란 진안군(이하 “군”라 한다) 주민(이 조례에서 “군민”이라 한다)이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·완화의료(이하 “호스피스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란 법 제2조제9호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(전자문서를

포함한다)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호스피스·의료완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진안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, 군에 주소를 가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) ① 군수는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진안군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와 방향
2.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
3. 교육 및 홍보
4. 필요한 재원조달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,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조성사업 등) ① 군수는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조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 현황
2. 전문인력 양성
3.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
4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

5.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
 6.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
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군수는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제6조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해야 한다.

제8조(사업지원 등) 군수는 효과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호스피스의 날)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